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37호 2014. 8. 1.(금)

## 【조 례】

## 【규 칙】

제467호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1
제468호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15
제469호 공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32
제470호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	51

## 【훈 령】

제239호 공주시 공약실천 관리 규정 전부개정	52
제240호 공주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67
제241호 공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77

## 【예 규】

제227호 공주시 시장지시사항 관리 지침	80
------------------------	----

## 【고 시】

제2014-107호 월미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문	87
제2014-10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문	104

## 【공 고】

제2014-1023호 도시계획시설(재활용처리시설)사업 완료공고	113
제2014-102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4
제2014-1028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1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1일

공주시 규칙 제467호

###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3조(「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 공주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제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2호서식]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 명*		
(11)근무기간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관						년 월 일 (인)	

주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일	(20) 이 력	(21) 연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 서식]

##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 (제9조제4항 관련)

날짜	출입시간		출 입 자				용무	결 재		
	부터	까지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담당	부서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자료의 대출·반납, 신규 회원가입 및 재발급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주시 시립도서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 식별(본인확인, 중복가입 여부), 안내(SMS 등)·고지사항 전달, 도서 장기연체시 우편발송 등 도서관 운영(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휴대전화, 자택)

※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성명, 연락처)

단, 타지역주민이면서 공주시 소재 재직자 및 재학생의 경우 학교·직장명, 전화(직장) 등 포함  
나. 선택항목 : 학교명, 학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통계처리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만 정보가 제공됩니다.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시 ~ 탈퇴시

다.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파기 요청 여부

###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장기연체시에 해당 읍·면·동에 주소 조회를 의뢰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주시 시립도서관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함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성명 : (서명)

## 공주시 시립도서관장

[별지 제2호 서식]

## 대출자료 반납 요청서

수 신 :

통지일자 :

귀하가 대출한 아래 자료는 대출 기한이 경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공주시 시립도서관 응진관이나 강북관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

번호	도서명	청구번호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 예정일	가 격	대 출 자료실
1							
2							
3							
4							
5							
6							

문의처 : 공주시 시립도서관

담당자 :

전 화 :

소재지 :

우편번호 :

공주시 시립도서관장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센터 사용 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단체번호)	
사용목적				
사용허가 기 준	20 . . . . ~ 20 . . . . ( 일간)			
	시간( ~ )			
사용료	\ 원(금 원)			
	※산출기초			
<p>「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뒷면 허가조건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공주시 시립도서관장</p>				

(뒷면 기재사항)

## 허 가 조 건

1. 아래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처분,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나.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관리의무 태만으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조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광고신청 계약등) ①·② (생략)</p> <p>③ 시장과 광고주간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광고주의 상호(주소), 성명, <u>주민등록번호</u></p> <p>2. ~ 5. (생략)</p>	<p>제2조(광고신청 계약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 <u>생년월일</u></p> <p>2. ~ 5. (현행과 같음)</p>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1일

공주시 규칙 제468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우편” 을 “일반우편”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대하여” 를 각각 “대해서”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를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전단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39조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하여” 를 각각 “대해서” 로 한다.

제46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대하여” 를 각각 “대해서” 로 한다.

제54조 단서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시청·읍면·동사무소” 를 “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하여는 인도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를 “대해서는 인도전에 보관자에게”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75조 본문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읍·면·동장” 을 “읍장·면장·동장” 으로 한다.

제93조제1호 중 “소홀히 함으로써” 를 “소홀히 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 중 “일단” 을 “우선” 으로 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제외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9조에 따른 <u>보통우편</u>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신고납부방법에 따른 징수 결정) ①·② (생략)</p> <p>③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수납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u>대하여</u>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와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체납자에 <u>대하여</u>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납부사항에 <u>대하여</u> 시금고의 수납 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따른 사후징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p>	<p>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 ----- -----<u>일</u> <u>반우편</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신고납부방법에 따른 징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대해서</u> ----- ----- ----- ----- ----- <u>대해서</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대해서</u> ----- ----- ----- -----.</p>

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5. ~ 11. (생략)

제14조(신고납부 시세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신고납부 하는 시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하는 시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

-----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5. ~ 11. (현행과 같음)

제14조(신고납부 시세의 처리) ① -----  
----- 대해서 -----  
-----  
-----.

② -----  
----- 대해서 -----



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납기별 체납액 징수) 독촉 기한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지방세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부과철회) ①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한 시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수유예일부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② ~ ④ (생략)

-----  
-----  
-----  
-----  
-----  
-----

제22조(납기별 체납액 징수) ---  
-----  
-----대해서-----  
-----  
-----  
-----  
-----  
-----

제24조(부과철회) ① -----  
-----대해서-----  
-----  
-----  
-----  
-----  
-----  
-----

- 1.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35조(납세담보의 관리)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납세담보에 대하여 매월 1회 보관 및 관리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관리대장의 점검란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관·관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9조(채납처분의 속행) 채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채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0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  
은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재산압류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 등에 대하여는 그 압류조서등본을 채

-----.  
-----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납세담보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해서-----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채납처분의 속행) -----  
-----  
----- 대해서 -----  
-----.

제40조(압류조서) ① -----  
-----  
-----  
-----  
-----  
-----.  
-----  
-----  
-----  
-----  
-----  
대해서-----

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42조(과실에 대한 압류) ① (생략)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 도 미치는것이나 압류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원본과 별도로 압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6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과실에 대한 압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대해서-----  
-----.

③ -----  
-----  
-----  
-----  
-----대해서-----  
-----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 대해서 -----  
-----  
-----  
-----  
-----.

② ----- 대해서 -----  
-----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채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일 전까지 청구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4조(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초에 작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참가압류) ①·② (생략)

③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중인 채납 시세에 대하여는 그 진

-----  
-----  
-----  
-----  
-----  
-----

③ -----  
----- 대해서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압류해제조서) -----  
-----  
-----  
----- 대해서 -----  
-----  
-----

제58조(참가압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해서 -----

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내용을 조사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한 후의 배당가능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배당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0조(공매공고) ① 공매공고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라 관보·시보·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시청·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공매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업체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체감) ①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생략)

제7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권리이

-----  
-----  
-----  
-----  
-----  
-----  
-----.

제60조(공매공고) ① -----  
-----  
-----  
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체감) ① -----  
-----대해서-----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  
-----대해서-----  
-----  
-----

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세무공무원은 제3자 또는 채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생략)

4.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의전의 수속을 시키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매각년월일·신구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을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을 대리하여 명의개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6. (생략)

제75조(징수금의 취급)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대해서  
-----는 인도전에 보관자에게-----  
-----  
-----.

3. (현행과 같음)

4. -----대해서-----  
-----  
-----  
-----  
-----  
-----  
-----  
-----  
-----  
-----  
-----.

5. 6. (현행과 같음)

제75조(징수금의 취급) -----  
--- 대해서 -----

받은 금전은 즉시 금고에 불입  
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  
하기 곤란한 것은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제76조에 따라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  
다.

제82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세  
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공매대행중지를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중지  
조치를 하고 후에 공매대행중지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  
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 8. (생략)
- ②·③ (생략)

제83조(공매대행 진행상황의 확  
인)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② (생략)

-----  
-----.  
-----  
-----  
-----  
-----

제82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  
-----  
-----  
-----  
-----  
-----  
-----  
-----  
-----

1. -----대해서-----  
-----
2. ~ 8.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공매대행 진행상황의 확  
인) ①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p>1. 결손처분된 자에 <u>대하여</u>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p> <p>2.·3. (생략)</p>	<p>1. -----<u>대해서</u>----- ----- ----- -.</p> <p>2.·3. (현행과 같음)</p>
---	---

공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1일

공주시 규칙 제469호

### 공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업소세 과세대장” 을 “과세대장” 으로 한다.

제10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 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의 “제1절 소득분” 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 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소득세” 를 각각 “주민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통징수)” 를 “(과세대장 정리)”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1회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앞의 “제2절 종업원분” 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지방소득세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의 신고납부(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제 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납부를 처리

한 경우에는 별지9호 서식의 신고납부(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 103조의2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7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 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7조 및 제100조, 제103조의9, 제103조의25,

제103조의38, 제103조의44, 제103조의51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 를 “안”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소를 새로이” 를 “사업소를” 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를 “다르거나” 로 한다.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9호까지,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5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7호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인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납 일	납기일자	가산세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sup>2</sup>)

■ 별지 제8호서식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제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 X 257mm (일반용지 80g/m<sup>2</sup>)

■ 별지 제9호서식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일련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 범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범인명	주 소		범인세	관 할 세무서	세 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제			
			전화번호	범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 별지 제12호서식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 율	본 세	가 산 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신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X 210mm(일반용지 80g/m<sup>2</sup>)

■ 별지 제13호서식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 무 서	세 율	본 세	가 산 세	계	결 의 일	결 재			
		전 화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담 당 자	담 당	과 장	

297mm X 210mm(일반용지 80g/m<sup>2</sup>)

※ 전신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신으로 생신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생략)</p> <p>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u>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 style="padding-left: 2em;"><u>제4장 지방소득세</u></p> <p style="padding-left: 4em;"><u>제1절 소득분</u></p> <p>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u>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 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신고납부(신고</u></p>	<p>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과세대장</u>-----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 종업원분</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u>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 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u></p>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② -----  
---주민세--- -----  
-----주민세-----  
-----  
-----.

③ 법정 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  
-----  
-----.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

(법인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절 종업원분

<신 설>

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1회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삭 제>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의 신고 납부(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제 103조의5 및 제103조의 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납부

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9호 서식의 신고납부(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 103조의2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7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장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의무자 대장을 매 월 작성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처리부

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7조 및 제100조, 제103조의9, 제103조의25, 제103조의38, 제103조의44, 제103조의51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 4. (생략)
- ② (생략)

제17조(과세대장 정리)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세대장 정리) ① -----  
-----  
-----  
-----안-----  
-----  
-----.

1. 사업소를-----  
--
2.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과세대장 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르거나-----  
-----  
-----.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1일

공주시 규칙 제470호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약실천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1일

공주시 훈령 제239호

### 공주시 공약실천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공주시 공약실천 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공약실천 관리 규정” 을 “공주시 공약 관리 운영 규정”  
으로 한다.

### 공주시 공약 관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계)**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이하 “공약사항” 이라 한다)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이하 “공약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공약담당부서의 장이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취합·정리하도록 한다.

**제3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 공약사항 검토의견서에 따라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3. 연도별 투자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③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공약심의평가위원회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주관 및 협조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약담당부서의 장이 확정·통지한 공약 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충청남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5.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7.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지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 및 협조부서에 시달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보류·폐기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공약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공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공약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약사항 변경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약사항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7조(공약관리시스템 등록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의 세부계획과 추진사항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수시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등록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매 분기별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관리카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심의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공약사항의 선정, 공약변경사항에 대한 심의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주시 공약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약사항에 대한 심의사항과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심의·평가결과를 조언·권고 및 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산업경제·도시환경 / 문화관광·농업 / 복지주거·교육·일반행정)로 공무원,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을 성실히 심의하고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심의·평가시기)** 공약 심의는 공약이 확정되기 이전과 공약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고, 공약 평가는 매년 1월에 실시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평가방법)** 공약 심의는 공약의 주관부서 검토의견, 사업방향, 예산확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약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처음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연차별 계획 이행 등의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결과의 공개 등)**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변경, 추진 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 시장 공약사항 검토의견서 (제3조제1항 관련)

	<b>검토결과</b>	임기내 완료, 임기내 착수, 임기내 기반조성, 추진불가				
<b>공 약 명</b>				<b>임시관리번호</b>		
<b>검토부서</b>	(☎ 행정 )		<b>협조부서</b>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 사업량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투자 계획 및 재원별 소요액**

연도별 재원별	임기 중 투자계획						
	계	기투자	년	년	년	년	년 이후
소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자 등							

**부서 검토의견**

- (법적근거)
- (추진방향)
- (기대효과)

### <검토의견서 작성요령>

- ① 사업위치: 사업의 위치(부지선정) 기술
- ② 사업량: 사업추진 시 적정 사업규모를 결정 기재
- ③ 사업기간: 사업의 적정 추진기간을 작성
- ④ 재원별 소요액: 투자 사업비를 재원별·연도별로 구분 작성
- ⑤ 지원근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근거법령을 상세히 기재
- ⑥ 기대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 ⑦ 검토의견: 공약사업의 실천가능성, 적법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투자비 및 효과 비교,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그 밖에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작성
- ⑧ 검토결과
  - 임기 내 완료
    - 추진기간이 비교적 단기(1~4년)인 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
    -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 임기 내 착수
    - 추진기간이 중기(5~10년)로 단기 완료가 곤란한 사업
    - 가용재원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
  - 임기 내 기반조성
    - 추진기간이 장기간(10년 이상)으로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하며 기반조성이 필요한 사업
    -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지역 여론화를 통하여 추진해야할 사업
  - 추진 불가 사업
    - 지역여건 및 실정을 감안할 때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 소요사업비가 과다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없는 사업
    - 관련법령 검토결과 추진 불가능 사업

[별지 2호 서식]

##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제4조제1항 관련)

	<b>달성목표</b>	임기내 완료, 임기내 착수, 임기내 기반조성			
<b>공 약 명</b>				<b>관리번호</b>	
<b>주관부서</b>	(☎ 행정 )	<b>협조부서</b>			
<b>사업구분</b>	신규사업, 계속사업	<b>사업기간</b>	~ ( )		
<b>사업(정책) 개요</b>	○ 사업위치 : ○ 사 업 량 : ○ 사업내용 :				

**사업목표**

○

○

○

**연차별 추진계획**

공 약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기 후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단위사업별	임기 중 투자계획						
	계	기투자	년	년	년	년	년 이후
소 계							
○○사업							
○○사업							
○○사업							

○ **재원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임기 중 투자계획						
	계	기투자	년	년	년	년	년 이후
소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자 등							

**성과목표(확인지표)**

— < 정량적 성과 > —

- 
- 
-

— < 정성적 성과 > —

- 
- 
-

[별지 3호 서식]

## 시장 공약사항 연도별 추진계획 (제6조 관련)

(부서명: )

□ 사업명:

(단위: 백만원)

구분 (연차별)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분기계획				비고
				1/4	2/4	3/4	4/4	
○○년								
○○년								
○○년								
○○년								

[별지 4호 서식]

##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제7조제1항 관련)

### ① 공약현황

관리번호		사업구분	신규 / 계속
사업시기	임기내 / 임기후	사업기간	단기 / 중기 / 장기
주관부서		추진상황	미착수 / 부진 / 정상추진 / 완료 / 완료 후 지속
사업주체	예) 국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구분	예산 / 비예산	총사업비	
추진부서		담당자	(☎ 행정 )
협조부서		타기관	

### ② 공약내용

공 약 명		공약분야	산업경제 / 도시환경 / 문화관광 / 농업 / 복지주거 / 교육 / 일반행정																																																					
배경 및 필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사업내용	<input type="radio"/> 사업기간 : <input type="radio"/> 사업위치 : <input type="radio"/> 사 업 량 : <input type="radio"/> 사업내용 :																																																							
투자계획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0%;">합 계</th> <th style="width: 10%;">기투자</th> <th style="width: 10%;">2014</th> <th style="width: 10%;">2015</th> <th style="width: 10%;">2016</th> <th style="width: 10%;">2017</th> <th style="width: 10%;">2018</th> </tr> </thead> <tbody> <tr> <td>소 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국 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 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 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민 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합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소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 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소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 자																																																								
기대효과																																																								

### 3 추진계획 및 실적 <구체적 예시>

기 간	추진계획	진행률 (%)	추진실적	추진율 (%)	집행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2014년 상반기	주민의견수렴, 주민설명회	10	설명회 개최 <input type="checkbox"/> 첨부	10	10	정상
2014년 하반기	실시계획 수립	20	실시설계발주 <input type="checkbox"/> 첨부	20	100	정상
2015년 상반기	토지매입보상 200,000㎡	35	토지매입 150,000㎡ <input type="checkbox"/> 첨부	30	800	일부추진 (부진)

### 4 확인지표(성과) <구체적 예시>

#### < 주요성과 >

- 일자리 1개 창출 / 근로자 00명 채용
- 위원회 00회 개최 >>> 현안사업 00개 사업 논의 >>> 3건 정책사업 반영
- 프로그램 00 홍보·운영 >>> 귀농,귀촌자 00명 증가

### 5 실적증빙

구 분	시 기	주요내용	비 고
관련공문			<input type="checkbox"/> 첨부
주요사진			<input type="checkbox"/> 첨부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첨부

### 6 공약변경사항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비 고
		공약명 / 기간 / 내용 / 투자계획			<input type="checkbox"/> 첨부

[별지 5호 서식]

## 시장 공약사항 관리카드 (제8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임기내/외		
공약분야		공약사업 구분		
추진사항(진도율)		총사업비(백만원)		
주관부서		협조부서		
공 약 명				
추진목적				
추진개요				
추진기간	추진계획			
연 도 별	총 사업비(백만원) <실집행액>			
	국비	도비	시비	민자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앞으로 추진계획	

공주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1일

공주시 훈령 제240호

### 공주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공주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의 개정) 공주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공주시 자원봉사은행 운영 규정」의 개정) 공주시 자원봉사은행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포털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회원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봉사은행에서는 포털시스템에 회

원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회원가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조 (「공주시 이동도서관 운영 규정」의 개정)** 공주시 이동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공주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 공무 국외여행 계획서

### 1. 여행계획 개요

여행 목적				
여행 동기 및 배경				
여행 기간	. . . ~ . . . (      박   일 )			
여행국				
여행경비 부담기관	(여행경비 부담기관별 부담내역을 기재함)			
여 행 자 및 여 행 경 비 내 역				
성 명		생 년 월 일	소속 및 직급	여행경비 (천원)
한 글	영 문			
			명	
계				

## 2. 여행 세부계획

### 가. 여행 목적

- (1)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2) 여행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2인이상 일 경우 개인별 임무)
- (3) 여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 나. 여행경비 산출내역

성명	항공운 임 (원)	체재비등(\$)					
		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	기타

### 다. 여행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명	업무수행내 용	접촉예정인 물 (직책포함)

[제2조 공주시 자원봉사은행 운영 규정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자원봉사활동 결과 보고서(제3조제4항제2호 관련)**

팀명: \_\_\_\_\_

작성자: \_\_\_\_\_

활동일자		활동시간	
프로그램명		수요처명	
자원봉사 참여자수		작성일	
<p>활동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시간대별 활동내용 기재</li> </ul>			
활동결과	<p>잘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p>개선할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p>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 자원봉사활동 주요 증빙자료

● 활동 사진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 자원봉사은행 인출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

<b>자원봉사은행 인출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b>				담당자	사무국장	센터장
신청자명		성 별	남 / 여	연 락 처		
생년월일		봉사시간 (마일리지)	시간	소속단체		
주 소				신청일자		
신청내용 (구체적)						

신청인 : \_\_\_\_\_ (서명)

확인일자		확인자	
확인내용			
확인자의견			
결정사항	<input type="checkbox"/> 인출가능(사유 : _____ ) <input type="checkbox"/> 인출불가(사유 : _____ ) <input type="checkbox"/> 인출 가능하나 연기(사유 : _____ ) <input type="checkbox"/> 재확인 요망(사유 : _____ )		
사 후 관 리	구 분	1회차	2회차
	배치봉사자		
	활동일자		
	활동내용		



공주시 자원봉사은행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봉사은행 가입 절차 등) ① 봉사은행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u>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u>를 작성하여 제출하 거나 포털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다.</p> <p>② <u>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봉사 은행에서는 포털시스템에 회원 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회원가 입이 승인된 은행고객은 자원봉 사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 다.</u></p> <p>③ (생 략)</p> <p>제10조(인출 절차) ① 인출을 희 망하는 은행고객은 자원봉사에 행 인출 신청서(별지 제3호 서 식)를 봉사은행에 제출한다.</p> <p>② ~ ⑤ (생 략)</p> <p>제12조(통장 및 활동수첩관리) ① (생 략)</p> <p>② 은행고객이 통장이나 활동수 첩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봉</p>	<p>제5조(봉사은행 가입 절차 등) ① ----- <u>회원가입</u>----- ----- -----.</p> <p>② <u>회원가입</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인출 절차) ① ----- ----- ----- <u>제2호</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통장 및 활동수첩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제3호</u> -----</p>

사은행에 제출하면 봉사은행에  
서는 포털시스템의 봉사 실적을  
근거로 재발급 한다.

③ (생 략)

-----  
-----.

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1일

공주시 훈령 제241호

### 공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면허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공주시에 1년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할 수 있다.
- ② 개인택시 양도 · 양수 및 대리운전은 신청일 기준으로 공주시에 1년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거주요건) ① <u>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6월 이상 공주시에 거주하고 당해 사업구역 안에서 1년 6월이상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사람</u></p> <p>② <u>개인택시 양도 양수 및 대리운전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공주시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u></p> <p>제16조(차고지 인정기준 등) ① <u>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고지의 확보증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주차장 차고시설인 경우 : 사용자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u></p> <p>2. <u>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차시설인 경우 : 사용자 또는 관리하는 사람의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u></p>	<p>제6조(거주요건) ① <u>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면허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공주시에 1년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할 수 있다.</u></p> <p>② <u>개인택시 양도 · 양수 및 대리운전은 신청일 기준으로 공주시에 1년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3. 주택내 공지로서 주차가 가능한 경우 :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계약서(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증명서)

4. 기타 차고지로서 사용가능한 장소 또는 주차시설인 경우 : 소유한 사람의 사용승낙서(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증명서)

② (삭제)

공주시 시장지시사항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1일

공주시 예규 제227호

### 공주시 시장지시사항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주시장 지시사항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  
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시사항"이라 함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각종 회의  
· 업무보고·순시 등을 통해서 본청·사업소·읍사무소·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등에 지시한 사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라 함은 기획담당관을 말한다.

3. "소관부서"라 함은 지시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지시사항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될 경우 직접적으로 주관하여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라 함은 지시사항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될 경우 주관부서에 협조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시사항의 구분)** 시장 지시사항(이하 "지시사항"이라 한다)은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시사항"은 관리번호가 부여된 지시사항으로 주요 현안 사항이나 새로운 시책 등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2. "훈시사항"은 공람에 의한 관련 모든 직원 주지 및 자체 수시교육 등으로 효과가 제고 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3. "추가지시"는 기존 지시사항과 중복·유사한 지시사항으로서 기존 지시사항에 포함시켜 동일 건으로 관리할 사항을 말한다.(기존 지시사항의 일련번호를 명시하고 "추가" 지시사항을 기록함)

**제4조(지시사항의 통보)** ① 총괄 부서장은 간부 회의나 주요업무보고시 지시사항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

합·정리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이 시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 부서장은 이를 제1항과 동일한 지시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장은 지시사항을 접수하는 즉시 선람하고 관계직원에게 공람·숙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시사항의 관리)** ① 총괄 부서장은 지시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시사항이 2개 부서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은 소관부서를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은 소관부서별로 각각 추진하되 주관부서장이 이를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 ① 지시사항을 통보 받은 소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5일 이내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지시사항 담당자는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세부 추진계획을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 장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또는 관리해야 할 지시사항에 대해 세부 추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 후 시

행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을 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예견되거나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확인·점검)** ① 소관부서장은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월1회이상 확인하여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반기별로 부서별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추진상황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시 장 지 시 사 항

   년   월   일       회의시

관리번호 호	지 시 내 용	추진부서 (협조부서)



〈별지 제3호 서식〉

## 시장 지시사항 관리카드

지시제목						
지시번호	지시일자	보고기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처리결과
<b>【지시내용】</b>						
<b>【추진계획】</b>						
<b>【추진실적】</b>						

## 월미2농공단지계획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공주월미2농공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월미2농공단지계획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829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4년 8월 1일<sup>인</sup>

##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월미2농공단지(변경없음)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발전에 기여
-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주시 산업구조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기반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를 건설하고자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농공단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368-1일원

나. 농공단지의 면적 : 69,366.0㎡ (당초 : 69,477.0㎡ 감 111.0㎡)

※ 월미동 382-7, 382-8 구역계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1년 ~ 2014년 12월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 5. 주요 유치업종(변경)

중분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5개 업종	56,270	100.0	
변경		56,271	100.0	
기정	C10 식료품 제조업	3,142	5.6	
기정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7,560	31.2	
변경		17,562	31.2	
기정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265	14.7	
기정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920	10.5	
기정	C28 전기장비 제조업	2,614	4.6	
기정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769	33.4	
변경		18,768	33.4	

유치업종 중분류 CODE : 제9차 한국산업표준분류 기준 적용

####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41-5(신관동)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 공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오홍규

##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

구분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비율 (%)	계	비율 (%)						
기정	합계	53	100.0	67,477.0	100.0	39	67,556.0	14	1,921.0	-	-
변경		51	100.0	69,366.0	100.0	39	67,556.0	12	1,810.0		
기정	전	10	18.9	48,531.0	69.9	10	48,531.0	-	-	-	-
변경		11	21.6	48,536.0	70.0	11	48,536.0	-	-	-	-
기정	답	17	32.1	8,705.0	12.5	15	8,594.0	2	111.0	-	-
변경		14	27.5	8,589.0	12.4	14	8,589.0	-	-	-	-
기정	임야	9	17.0	9,940.0	14.3	9	9,940.0	-	-	-	-
변경		9	17.6	9,940.0	14.3	9	9,940.0	-	-	-	-
기정	구거	9	17.0	1,335.0	1.9	3	405.0	6	930.0		
변경		9	17.6	1,335.0	1.9	3	405.0	6	930.0		
기정	도로	6	11.3	880.0	1.3	-	-	6	880.0	-	-
변경		6	11.8	880.0	1.3	-	-	6	880.0	-	-
기정	제방	2	3.7	86.0	0.1	2	86.0	-	-	-	-
변경		2	3.9	86.0	0.1	2	86.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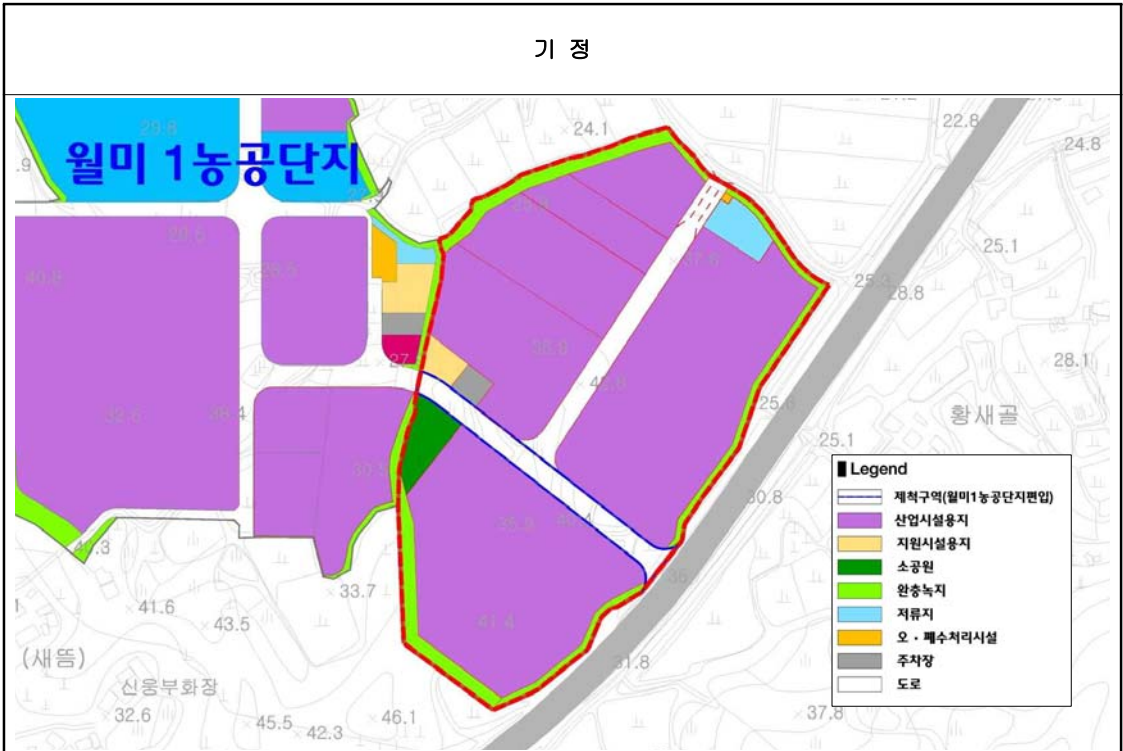
##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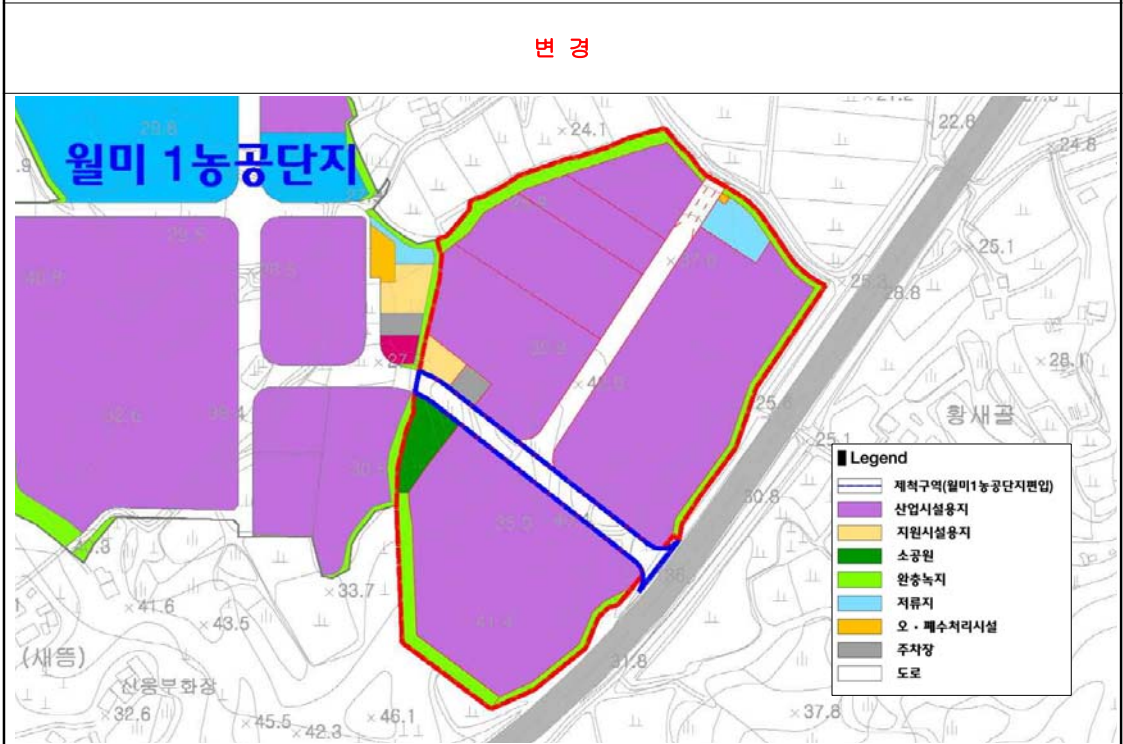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69,477.0	69,366.0	감)111.0	100.0	
산	업	56,270.0	56,271.0	증)1.0	81.1	
지	원	619.0	619.0	-	0.9	
	소	12,588.0	12,476.0	감)112.0	18.0	
공	공	1,106.0	1,106.0	-	1.6	
	원	33.0	33.0	-	0.1	펌핑장
	완	1,396.0	1,382.0	감)14.0	2.0	
	충	6,151.9	6,053.9	감)98.0	8.7	
	녹	434.0	434.0	-	0.6	
	지	3,467.1	3,467.1	-	5.0	

< 토지이용계획(안)도 >

기 정



변 경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1) 교통시설 계획(변경없음)

#### 가) 도로 총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1	224	3,467.1	-	-	-	1	224	3,467.1	-	-	-
기정	중로	1	224	3,373.0	-	-	-	1	224	3,373.0	-	-	-
기정	기타	-	-	94.1	-	-	-	-	-	94.1	-	-	-

주 : 기타는 각각면적

#### 나) 도로계획(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224	중로2-1	산45-3임	일반도로	농공단지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주 : ( ) 단지의 도로 연장을 포함한 도로 총연장임

#### 다)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월미동 368-1번지	434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 2) 공간시설 계획(변경)

### 가)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월미동 383번지 일원	1,396	감)14	1,382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 나) 녹지(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51.9	감)98.0	6,053.9	-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1번지 일원	1,830.9	감)3.0	1,827.9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56-1번지 일원	1,994.0	-	1,994.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201번지 일원	1,607.0	감)35.0	1,572.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④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2번지 일원	720.0	감)60.0	660.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 3) 방재시설 계획(변경없음)

### 가) 우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우수지	저류 시설	월미동 368-3번지 일원	1,106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 4) 환경기초시설 계획(변경없음)

###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월미동 368-3번지 일원	33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5)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공업용수량 산정

유치업종		계획면적 (㎡)	원단위 (㎡/천㎡·일)	계획용수량 (㎡/일)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6,270 56,271	-	385.5	
기정	C10 식 료 품 제 조 업	3,142	11.13	35.0	
기정 변경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7,560 17,562	8.08	141.9	
기정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265	4.64	38.3	
기정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5,920	14.62	86.6	
기정	C28 전 기 장 비 제 조 업	2,614	6.24	16.3	
기정 변경	C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18,769 18,768	3.59	67.4	

자료 :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안) 2008. 10』 환경부, 국토해양부

생활용수량 산정

구 분	계획인구(인)	원단위(ℓ/인/일)	계획용수량(㎡/일)	비고
합 계	306	-	29.1	
산업용지	291	-	27.6	
산업시설	상근인구	261	100	26.1
	이용인구	30	50	1.5
지원시설용지	15	100	1.5	

전체 용수량 산정

구 분	합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비 고
용수량	414.6	385.5	29.1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오·폐수량 산정

구 분	계획 오·폐수량(㎡/일)	비 고
합 계	161.6	발생되는 오·폐수를 오·폐수처리시설 (펌핑장)을 통해 공주 월미1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
생 활 오 수	27.5	
공 업 폐 수	134.1	

다) 전력 공급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	단위부하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비고		
기정	합 계		-	-	22,347.9		
변경					22,348.9		
산업 시설 용지	기정	소 계		56,270.0	-	22,148.1	
	변경			56,271.0		22,149.1	
	기정	C10	식료품제조업	3,142.0	466	1,464.2	부지면적기준
	기정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17,560.0	601	10,553.6	부지면적기준
	변경			17,562.0		10,554.8	
	기정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265.0	214	1,768.7	부지면적기준
	기정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920.0	384	2,273.3	부지면적기준
	기정	C28	전기장비제조업	2,614.0	412	1,077.0	부지면적기준
기정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769.0	267	5,011.3	부지면적기준	
변경			18,768.0		5,011.1		
기정	지원시설용지		929.0	196.4	182.4	연면적기준 (150%)	
공공 시설 용지	기정	소 계		12,588.0	-	17.4	
	변경			12,476.0			
	기정	도	로	3,467.1	-	14.2	부지면적기준
	기정	주	차 장	434.0	-	1.8	부지면적기준
	기정	유	수 지	1,106.0	-	-	
	기정	오 · 폐수처리시설		33.0	1,718	0.3	
	기정	공	원	1,396.0	-	1.1	부지면적기준
	변경			1,382.0			
기정	녹	지	6,151.9	-	-		
변경			6,053.9				

라)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규 모	회 선 기 준	통신수요(회선)	비 고
261(상근인구)	1.0회선/10인	34	여유율 30% 적용

마) 에너지 공급계획(변경)

구분	면적 (㎡)	원단위 (Gcal/㎡·년)	직·간접열비율		간접열 수요량 (Gcal/년)	비고	
			직접열	간접열			
기정 변경	합 계	56,270 56,271	-	-	50,929.7 50,934.7		
기정	C10 식료품 제조업	3,142	1.176	0.14	0.86	3,177.7	
기정 변경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17,560 17,562	3.534	0.342	0.658	40,833.5 40,838.2	
기정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265	0.356	0.285	0.715	2,103.8	
기정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920	0.325	0.318	0.682	1,312.2	
기정	C28 전기장비 제조업	2,614	0.449	0.673	0.327	383.8	
기정 변경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769 18,768	0.331	0.498	0.502	3,118.7 3,118.5	

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농공단지 내 총 폐기물발생량은 (71.17톤/일 (생활폐기물 : 0.23톤/일, 산업폐기물 : 70.94톤/일)임
-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 한 후 공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

##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변경)

###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9,477.0	감)111.0	69,366.0	100.0	
소 계	69,477.0	감)111.0	69,366.0	100.0	
관 리 지 역	보전관리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69,477.0	감)111.0	69,366.0	100.0

※ 월미2농공단지구역 제척(382-8, 382-7)에 따른 면적 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참조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공주 월미 2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월미동 368-1번지 일원	69,477.0	감)111.0	69,366.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주 월미 2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69,477.0㎡→69,366.0㎡ 감)111.0㎡	월미2농공단지구역 제척(382-8, 382-7)에 따른 면적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1	224	3,467.1	-	-	-	1	224	3,467.1	-	-	-
기정	중로	1	224	3,373.0	-	-	-	1	224	3,373.0	-	-	-
기정	기타	-	-	94.1	-	-	-	-	-	94.1	-	-	-

주 : 기타는 가각면적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224	중로2-1	산45-3임	일반도로	농공단지	광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주 : ( ) 단지의 도로 연장을 포함한 도로 총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월미동 368-1번지	434	광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나) 공간시설(변경)

(1) 공 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월미동 383번지 일원	1,396.0	감) 14.0	1,382.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완충녹지	•면적 : 1,396.0→1,382.0㎡ 감) 14.0㎡	• 소공원 정형화를 위한 면적변경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51.9	감) 98.0	6,053.9	-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1번지 일원	1,830.9	감) 3.0	1,827.9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56-1번지 일원	1,994.0	-	1,994.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201번지 일원	1,607.0	감) 35.0	1,572.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④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2번지 일원	720.0	감) 60.0	660.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완충녹지	•면적 : 1,830.9→1,827.9㎡ 감) 3.0㎡	• 소공원 정형화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③	완충녹지	•면적 : 1,607.0→1,572.0㎡ 감) 35.0㎡	• 농공단지 구역계 조정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④	완충녹지	•면적 : 720.0→660.0㎡ 감) 60.0㎡	• 농공단지 구역계 조정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월미동 368-3번지 일원	1,106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월미동 368-3번지 일원	33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	-	-	56,270
		56,271			56,271
기정	산업 시설 용지	산업1	기정 : 19,941	1	8,265
				2	5,920
				3	2,614
				4	3,142
기정 변경	산업2	기정 : 18,769 변경 : 18,768	1	18,769	
18,768					
기정 변경	산업3	기정 : 17,560 변경 : 17,562	1	17,560	
17,562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지원시설용지	지원1	619	1	619	

다)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1,573		1,573	
공공시설용지	공공1	1,106	1	1,106	유수지
	공공2	33	1	33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3	434	1	434	주차장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3	산업시설용지 산업1 ~ 산업3	용 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주변지역과의 완충기능 또는 경관기능의 식재를 할 것	
		건축선	중로2-2호선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그 외 중로, 국도 36호선변 5m 건축한계선 지정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3	산업시설용지 산업1 ~ 산업3	용 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30m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주변지역과의 완충기능 또는 경관기능의 식재를 할 것	
건축선	중로2-2호선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그 외 중로, 국도 36호선변 5m 건축한계선 지정			

나) 지원시설용지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지원시설용지 지원1	용 도	허용용도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불허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 치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건축선	-

다) 공공시설용지

- 유수지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	공공시설용 지 공공1	용 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저류시설
			불허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배 치	-
		건축선	-

○ 수질오염방지시설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2	공공시설용 지 공공2	용 도	허용용도	공주 월미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장에서의 연계처리를 위한 펌핑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배 치	-	
		건축선	-	

○ 주차장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3	공공시설용 지 공공3	용 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2조제11항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 치	-	
		건축선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계재생략)

11. 지형도면 고시도면(축척 1/1,000) : 계제 생략.

##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태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 공 주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태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재해위험지구 하천의 제방축조 및 호안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개 요 : 하천정비 L=1.64km, 교량3개소, 배수공 9개소, 하상보호공 2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공주시 태봉동 일원(태봉천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공주시장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 수 일 : 2015. 2. 1.      - 준공예정년월일 : 2016.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관리에 관한 명세 : 붙임 1,2
  -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는 안전관리과 비치
7. 설계도서(공사예정공정표) : 공주시 안전관리과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3년까지	2014년	향후	비고
사업비	5,859	300	1,583	3,976	

11.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태봉천 (지방하천)
  - 위치 및 사업규모 : 상기와 같음
12. 폐천부지등의 발생예상면적 : 없음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840-86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 조서

연번	위치	분할전		공부상 면적 (㎡)	분할후		지목	주소	소유자
		지번	지적		지번	지적			
	합계		181,761	181,686		33,725			
1	공주시 태봉동	200-2	320	320		98	전	국	건교부
2	공주시 태봉동	200-1	113	113		37	전	국	건교부
3	공주시 태봉동	201-1	327	327		19	천	국	충청남도
4	공주시 태봉동	199-27	1,064	1,064		454	천	국	충청남도
5	공주시 태봉동	199-4	971	971	199-29	12	답	공주시 금학동 184-5(수원지공원길 16-4)	이대복
6	공주시 태봉동	199-6	1,437	1,437	199-30	15	답	공주시신관동24-64주 공아파트 315-106	강봉규
7	공주시 태봉동	199-5	75		199-5	75	임	공주군공주읍반죽동245 공주군공주읍반죽동245 공주군공주읍반죽동245 경기도부천시소사구 경인로133번길34,301 동402호(송내동,푸른 빌아파트)  서울특별시강동구성 안로155,319호(천호 동,두산위브세트움오 피스텔)  미국캘리포니아주버뱅크 크줄리드라이브3012	김종석 김경태 김한태 김용권  김지훈 김유나
8	공주시 태봉동	560	48,997	48,997		12,362	구	국	농수산부
9	공주시 태봉동	198-6	2,569	2,569	198-15	664	답	충청남도공주시태봉 동364	김원희
10	공주시 태봉동	198-7	2,509	2,509	198-16	150	답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369	김순희
11	공주시 태봉동	197	1,478	1,478	197-1	685	답	공주시 옥룡동 327-7	황용진
12	공주시 태봉동	196	1,088	1,088	196-1	623	답	공주시 옥룡동 327-7	황용진
13	공주시 태봉동	195-2	2,843	2,843	195-4	1,331	답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서로6번길 14, 302호(변동, 궁전하이츠)	김원희
14	공주시 태봉동	195-3	1,792	1,792	195-5	43	답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서로6번길 14, 302호(변동, 궁전하이츠)	김원희
15	공주시 태봉동	194-1	3,107	3,107	194-3	750	답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129	이남영

연번	위치	분할전		공부상 면적 (㎡)	분할후		지 목	주소	소유자
		지번	지적		지번	지적			
16	공주시 태봉동	256-1	3,149	3,149	256-4	1,638	답	공주시 웅진전골2길 15	김갑식
17	공주시 태봉동	257-1	543	543	257-4	89	답	공주시 웅진전골2길 15	김갑식
18	공주시 태봉동	280-8	66	66		6	도	국	건설부
19	공주시 태봉동	256-2	122	122		37	도	국	건설부
20	공주시 태봉동	564	7,901	7,901		488	도	국	건설부
21	공주시 태봉동	280-7	99	99		81	도	국	건설부
22	공주시 태봉동	280-11	239	239	280-13	22	답	공주시 우금티로 96-3	방근식
23	공주시 태봉동	277	516	516	277-1	71	전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130	신현택
24	공주시 태봉동	275	793	793	275-1	311	답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130	신현택
25	공주시 태봉동	202-1	3,034	3,034		76	천	국	충청남도
26	공주시 태봉동	199-28	51	51		49	임	국	충청남도
27	공주시 태봉동	203	6,142	6,142	203-2	1,135	답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257	임석규
28	공주시 태봉동	206-2	1,686	1,686	206-7	176	답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84, 1201동 1905호(관저동,느리 울마을)	양희상
29	공주시 태봉동	206-5	1,769	1,769	206-8	112	답	논산시 부적면 반송길 117-3	이영희
30	공주시 태봉동	206-3	271	271	206-3	271	구	논산시 부적면 반송길 117-3	이영희
31	공주시 태봉동	208-1	2,331	2,331	208-4	14	전	공주시 한적2길 51-14, 104동 502호(금흥동,우남퍼 스트빌)	김혜숙
32	공주시 태봉동	208-2	995	995	208-5	68	전	공주시 태봉동 239	변중섭
33	공주시 태봉동	211-1	1,544	1,544	211-3	609	답	공주시 신금1길 98, 405동 1703호(금흥동, 새움현대아파트)	박영식
34	공주시 태봉동	571	4,128	4,128		26	도	국	건설부
35	공주시 태봉동	210-1	2,380	2,380	210-3	5	전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100 (태봉동)	이기세

연번	위치	분할전		공부상 면적 (㎡)	분할후		지 목	주소	소유자
		지번	지적		지번	지적			
36	공주시 태봉동	212-1	932	932	212-3	91	답	공주시 태봉동 214	최병선
37	공주시 태봉동	253	2,136	2,136	253-1	1,306	답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92 대덕테크노밸리7단지 아파트 711-702	신의철
38	공주시 태봉동	254	2,380	2,380	254-1	234	답	공주시 변영1로 194-7,111동 1002호(신관동, 대아아이투빌)	김태숙
39	공주시 태봉동	255-3	783	783	255-6	16	답	공주시 봉황동 326-1	조희옥
40	공주시 태봉동	255-4	311	311	255-7	2	답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254	김임재
41	공주시 태봉동	255-1	660	660	255-5	138	대	충청남도 공주시 원태봉길 6(태봉동)	김재일
42	공주시 태봉동	259-8	1,672	1,672	259-12	72	답	충청남도공주시신금1 길30-3,312동206호( 신관동,주공아파트)	황담익
								충청남도공주시태봉 삼박골길25(태봉동)	오미선
43	공주시 태봉동	259-4	790	790	259-10	40	답	충청남도공주시이인 면신흥송정길5-11	김명규
								충청남도공주시이인 면신흥송정길11-12	김광삼
								충청남도홍성군홍성 읍내포로156번길18,3 03호	김남규
44	공주시 태봉동	259-5	311	311	259-11	273	도	충청남도공주시이인 면신흥송정길5-11	김명규
								충청남도공주시이인 면신흥송정길11-12	김광삼
								충청남도홍성군홍성 읍내포로156번길18,3 03호	김남규
45	공주시 태봉동	259-1	995	995	259-9	520	답	충청남도공주시이인 면신흥송정길5-11	김명규
								충청남도공주시이인 면신흥송정길11-12	김광삼
								충청남도홍성군홍성 읍내포로156번길18,3 03호	김남규
46	공주시 태봉동	274-2	86	86		79	도	국	건설부
48	공주시 태봉동	274-1	208	208	274-4	122	창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58-1(웅진그린빌 201호)	박영수
49	공주시 태봉동	272-3	630	630	272-7	349	창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58-1(웅진그린빌 201호)	박영수
50	공주시 태봉동	273-2	73	73		34	도	국	건설부

연번	위치	분할전		공부상 면적 (㎡)	분할후		지목	주소	소유자
		지번	지적		지번	지적			
51	공주시 태봉동	272-5	727	727	272-8	91	답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58-1(웅진그린빌 201호)	박영수(압 류)
52	공주시 태봉동	270	2,009	2,009	270-3	1,151	답	부여군남면삼용 리124  청양군지곡면화 산리246  경기도성남시중 원구은행로3번 길4,201호(은행 동,금능빌라)  인천연수구해송 로13,115동1201 호(송도동송도 웰카운티1단지A PT)	홍병학 홍범섭 홍순희 홍순홍
53	공주시 태봉동	270-2	815	815		121	답	국	건교부
54	공주시 태봉동	575	648	648		51	도	국	건교부
55	공주시 태봉동	276-1	23,708	23,708		20	임	국	건교부
56	공주시 태봉동	560-1	783	783		31	구	국	농수산부
57	공주시 태봉동	577	4,701	4,701		127	도	국	건교부
58	공주시 태봉동	304-6	102	102		103	답	국	건교부
59	공주시 태봉동	304-7	512	512		105	답	국	건교부
60	공주시 태봉동	304-1	1,822	1,822	304-10	865	답	공주시 무령로 169-5, 103동 1702호(교동, 대우아파트)	백학선
61	공주시 태봉동	304-2	371	371	304-11	12	답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376-11 장안아파트 101-1102	홍성길
62	공주시 태봉동	305	1,608	1,608	350-2	758	답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중로 38, 202동 201호(복수동, 삼익목화아파트)	최영자
63	공주시 태봉동	305-1	147	147		3	답	국	건교부
64	공주시 태봉동	309	2,208	2,208		217	답	국	건교부

연번	위치	분할전		공부상 면적 (㎡)	분할후		지목	주소	소유자
		지번	지적		지번	지적			
66	공주시 태봉동	272-1	1,517	1,517	272-6	511	답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96-3(태봉동)	김규석
67	공주시 태봉동	271-1	4,018	4,018	271-4	336	답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96-3(태봉동)	김규석
68	공주시 태봉동	269-4	2,566	2,566	269-5	401	답	충청남도공주시태봉 동269-1 우금티로80	홍석주
69	공주시 태봉동	574	4,066	4,066		383	도	국	건설부
70	공주시 태봉동	298	4,651	4,651	298-1	1,016	답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위뜸길 13(태봉동)	백학길
71	공주시 태봉동	297	575	575	297-1	235	답	공주시 하선길 42-2(금학동)	김도일
72	공주시 태봉동	306	1,838	1,838	306-2	735	답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73	공주시 태봉동	307	192	192	307	192	답	공주시 하선길 42-2(금학동)	김도일
74	공주시 태봉동	560-4	3,470	3,470		96	구	국	농수산 부
75	공주시 태봉동	306-1	33	33		31	답	국	건교부

[붙임 2] 물건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소유자	비고
1	공주시 태봉동	197	밤나무		10	주		
			매실나무		2	주		
			감나무		2	주		
2	공주시 태봉동	196	감나무		2	주		
			은행나무		3	주		
			매실나무		2	주		
3	공주시 태봉동	211-1	인삼포	직파2년	2,100	㎡		
			관정	농업용	1	식		
4	공주시 태봉동	194-1	뽕나무		1	주		
5	공주시 태봉동	256-1	백일홍		7	주		
			관정	농업용	1	식		
6	공주시 태봉동	255-1외	바닥 콘크리트		25	㎡		
			파고라		10	㎡		
			자귀나무		2	주		
7	공주시 태봉동	255-1외	매실나무		4	주		
			자두나무		1	주		
			단풍나무		4	주		
			애기사과		2	주		
			명자		1	주		
			불도화		1	주		
			복숭아		1	주		
			소나무		14	주		
			대추나무		1	주		
			은행나무		9	주		
8	공주시 태봉동	272-2외	버섯재배사	내부시설, 보수비포함	70	㎡		
			비닐하우스		49	㎡		
			저온창고	지붕함석	20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소유자	비고
9	공주시 대봉동	272-2외	냉장고	대형	1	식		
			자재이전 비		1	식		
			관정		1	식		
			이동식화 장실		1	식		
			바닥콘크 리트		234	m <sup>2</sup>		
			철죽		31	주		
			백일홍		2	주		
			모과나무		1	주		
			보리수		2	주		
			배나무		1	주		
			감나무		2	주		
			포도나무		2	주		
			두릅나무		20	주		
			무궁화		5	주		
10	공주시 대봉동	272-2외	복분자		30	주		
			병나무		4	주		
			윗나무		8	주		
		272-2외	화살나무		1	주		
			개나리		2	주		
			단풍나무		1	주		
			영자나무		3	주		
			매실나무		3	주		
			전나무		3	주		
			느티나무		1	주		
			대추나무		1	주		
			벗나무		1	주		
			오가피		7	주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소유자	비고
11	공주시 태봉동	274-1외	쥐똥나무		3	주		
			목련		1	주		
			잣나무		1	주		
			꽃사과		1	주		
			울나무		8	주		
			무화과		1	주		
			앵두나무		1	주		
			이팝나무		1	주		
12	공주시 태봉동	272-1	두충나무		2	주		
13	공주시 태봉동	271-1	소나무		1	주		
			뽕나무		2	주		
14	공주시 태봉동	269-4	개나리		150	주		
		269-4	엄나무		1	주		
15	공주시 태봉동	269-4	두릅나무		50	주		
		269-4	백일홍		1	주		
		269-4	뽕나무		1	주		
16	공주시 태봉동	298	감나무		3	주		
			뽕나무		3	주		
17	공주시 태봉동	304-1	뽕나무		2	주		
			감나무		1	주		
18	공주시 태봉동	306	관정		1	식		
			뽕나무		1	주		
19	공주시 태봉동	270	관정		1	식		
			두충나무		4	주		
			뽕나무		1	주		
20	공주시 태봉동	275	자두나무		1	주		
		275	매실나무		4	주		

## 도시계획시설(재활용처리시설)사업 완료공고

이인면 운암리 16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이인면 운암리 164번지 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일반폐기물처리시설)
  - 명 칭 : 일반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공사
3.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4.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 업 개 요
도시계획시설 (재활용처리시설)	9,447	◦ 일반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공사 - 재활용처리시설 : 부지면적 9,447㎡,

5. 사업기간 : 2012. 7. 10. ~ 2014. 8. 1.(인가기한 : 2014. 12. 31.)

6. 사업편입 토지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주 소	관 계 인	비고
	면	리							
1	이인면	운암리	119	전	1,33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	
2	이인면	운암리	164	전	3,568				
3	이인면	운암리	164-2	전	1,052				
4	이인면	운암리	165	전	1,179				
5	이인면	운암리	165-2	전	2,318				
합계			5필지		9,447				

공주시 공고 제 2014-102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시사회복을 위한 우수기업유치·시정홍보 등의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시정수행 의지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기구조정 : 경제과 → 기업경제과
- 나. 공무원 종류별 정원
  - 공무원 총정원 : 변동없음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관리운영·전담직위포함)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4급	5급	6급이하	6급상이하	소계	연구사	연구관	소계	지도사	지도관
현행	998	1	962	6	51	905		5	5	0	30	27	3
개정	998	1	960	6	52	902	2	5	5	0	30	27	3
증감			-2		1	-3	2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담당)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880 / 전화: 041-840-2068 / FAX: 041-840-2401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안전산업국에 두는 과) ① 안전 산업국에 안전관리과, <u>경제과</u> , 건설과, 산림과, 도시재생과, 허가과, 교통과, 환경과, 청소과, 수도과를 둔다.	제8조(안전산업국에 두는 과) ① ----- ----- <u>기업경제과</u> ----- ----- -----

[별표 5]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5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회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98	-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960	-				
4 급	6	4	1	1		
5 급	52	26	2	5	3	16
6 급 이 하	902	-				
별 정 직 계	2					
6급상당 이하	2					
연 구 직 계	5	-				
연 구 관						
연 구 사	5	-				
지 도 직 계	30	-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7	-				

#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세종시 출범으로 시세가 약화됨에 따라, 시세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우수기업유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 2. 비용추계의 전제

9급을 1명 감하여 5급 1명을 책정하였으므로 2014년 상반기에 지급된 5급과 9급의 평균인건비를 파악하여 활용

## 3. 산출방식

< 비용추계 산식 >
○ (2014년 연간 5급 평균 인건비) - (2014년 연간 9급 평균 인건비) ( 72,916천원 - 22,333천원) * 1명 = 50,583천원

## 4. 비용추계의 결과

5급과 9급의 평균 인건비 차이가 년 50,583천원으로 50,583천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5. 부대의견

없음.

## 6. 작성자

작성자	인사담당 주병학
연락처	840-2066

공주시 공고 제 2014-1028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시사회복을 위한 우수기업유치·시정홍보등의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시정수행 의지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기구명칭 변경

- 경제과 → 기업경제과(안 제23조)

#### 나. 공무원 종류 및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51조제1항)

-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 변동없음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조정(안 제51조 제1항)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관리운영·전담직위포함)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4급	5급	6급이하	계	6급상당	7급상당	소계	연구사	연구관	소계	지도사	지도관
현행	998	1	962	6	51	905				5	5	0	30	27	3
개정	998	1	960	6	52	902	2	1	1	5	5	0	30	27	3
증감			-2		1	-3	2	1	1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일반직(관리운영·전담직위포함)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962	6	51	251	280	225	149
개정	960	6	52	249	279	226	148
증감	-2		1	-2	-1	1	-1

### 다. 부서별 정원 조정(안제51조제2,4항)

- 시정담당관 : 일반직 2명 감, 별정직 2명(6급상당, 7급상당) 증
- 관광과 : 2명 감(18명→16명), 고마센터 민간위탁, 관리 인력 감축
- 경제과 : 1명증(18명→19명), 기업유치 인력보강
- 도시재생과 : 1명증(15명→16명), 도시재생분야 인력보강
- 보건과 : 정원 증감 없이 직급 조정(6급 1명→8급 1명)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담당)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880 / 전화: 041-840-2068 / FAX: 041-840-2401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 별표6,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2항 중 “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1조(안전산업국) 안전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 <u>경제과장</u>·건설과장·도시재생과장·허가과장·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21조(안전산업국) ----- ----- ----- <u>기업경제과장</u> ---- ----- ----- ----- ----- ----- ----- -----</p>
<p>제23조(<u>경제과</u>) <u>경제과</u>의 설치 목적은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창업, 유치, 경영개선과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균형 있는 시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호 부터 제40호 까지 (생략)</p>	<p>제23조(<u>기업경제과</u>) <u>기업경제과</u> ---- ----- ----- ----- ----- ----- ----- ----- 제1호 부터 제40호 까지 ( 현행과 같음)</p>

(별표3)

#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b>총 계</b>	<b>998</b>	<b>534</b>	<b>17</b>	<b>157</b>	<b>62</b>	<b>228</b>	<b>21</b>	<b>134</b>	<b>73</b>
<b>정무직 계</b>	<b>1</b>	<b>1</b>							
시장	1	1							
<b>일반직 계</b>	<b>960</b>	<b>527</b>	<b>17</b>	<b>127</b>	<b>61</b>	<b>228</b>	<b>21</b>	<b>134</b>	<b>73</b>
<b>4급 소계</b>	<b>6</b>	<b>4</b>	<b>1</b>	<b>1</b>					
지방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	3	1						
<b>5급 소계</b>	<b>52</b>	<b>26</b>	<b>2</b>	<b>5</b>	<b>3</b>	<b>16</b>	<b>1</b>	<b>9</b>	<b>6</b>
지방행정사무관	7	7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행정·사서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지방행정·환경사무관	2	2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5	11	2		2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8					8	1	7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b>6급 소계</b>	<b>249</b>	<b>141</b>	<b>3</b>	<b>39</b>	<b>13</b>	<b>53</b>	<b>5</b>	<b>36</b>	<b>12</b>
지방행정주사	74	51	2		6	15	1	9	5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시설주사	12	12							
지방보건주사	1			1					
지방보건진료주사	15			15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5	4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6	5			1	10	1	6	3
지방행정·전산주사	2	2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5	5							
지방행정·농업주사	12	1		4		7	1	3	3
지방행정·녹지주사	4	3			1				
지방행정·보건주사	4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지방행정·시설주사	26	24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간호주사	3			3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7					7	1	6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4	1				3		3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2	2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1	2				9	1	8	
지방행정·농업·축산주사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지방농업·녹지·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지방운전주사	2	2							
지방위생주사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지방기계운영주사	1				1				
<b>7급 소계</b>	<b>279</b>	<b>174</b>	<b>4</b>	<b>28</b>	<b>15</b>	<b>58</b>	<b>5</b>	<b>31</b>	<b>22</b>
지방행정주사보	73	53	2	1	5	12	2	2	8
지방세무주사보	7	7							
지방전산주사보	2	2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9	7				12		6	6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사서주사보	4				4				
지방공업주사보	6	4		1	1				
지방농업주사보	3			3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2			2					
지방보건진료주사보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27	27							
지방방송통신주사보	2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6	6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2	3				9	1	5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4	6				8	1	6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5	4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6	2		2		12		10	2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2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9	15	1			3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지방농업·수의주사보	3	1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2	2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지방운전주사보	6	6							
지방위생주사보	2	1				1			1
지방시설관리주사보	1	1							
지방통신운영주사보	1				1				
지방전기운영주사보	2	2							

(별 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기계운영주사보	5	2	1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b>8급 소개</b>	<b>226</b>	<b>116</b>	<b>3</b>	<b>39</b>	<b>13</b>	<b>55</b>	<b>4</b>	<b>34</b>	<b>17</b>
지방행정서기	44	25	3		1	15	2	6	7
지방전산서기	1	1							
지방세무서기	10	9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10	4				6		6	
지방사서서기	2				2				
지방공업서기	3	1			2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4			4					
지방보건진료서기	3			3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지방환경서기	2	2							
지방시설서기	19	10			1	8		8	
지방행정·전산서기	3	2			1				
지방행정·세무서기	9	1				8	1	3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2	8			1	3		2	1
지방행정·공업서기	6	6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1		5	1	2	2
지방행정·녹지서기	2	2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3	
지방행정·환경서기	3	3							
지방행정·시설서기	20	17				3		1	2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지방공업·농업서기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3			3					
지방보건·간호서기	7			7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2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지방운전서기	10	9			1				
지방위생서기	6			1	2	3		2	1
지방전기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6	4		1	1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사무운영서기	2	2							
<b>9급 소계</b>	<b>148</b>	<b>66</b>	<b>4</b>	<b>15</b>	<b>17</b>	<b>46</b>	<b>6</b>	<b>24</b>	<b>16</b>
지방행정서기보	26	8		1	2	15	2	9	4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0	3				7	2	2	3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농업서기보	2			1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2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1				3		2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7	1				6		1	5
지방행정·공업서기보	2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보	6	1		1		4		4	
지방행정·녹지서기보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2	2							
지방행정·시설서기보	5	4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지방행정·시설·녹지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속기서기보	2		2						
지방운전서기보	25	19	2	2	2				
지방위생서기보	10			1	3	6		3	3
지방시설관리서기보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지방통신운영서기보	1	1							
지방전기운영서기보	1				1				
지방기계운영서기보	5	2		1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17	11		2	3	1		1	
<b>연구직 계</b>	<b>5</b>	<b>4</b>			<b>1</b>				
지방학예연구소	3	2			1				
지방기록연구소	2	2							
<b>지도직 계</b>	<b>30</b>			<b>30</b>					
<b>지도관 소계</b>	<b>3</b>			<b>3</b>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b>지도사 소계</b>	<b>27</b>			<b>27</b>					
지방농촌지도사	23			23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b>별정직 계</b>	<b>2</b>	<b>2</b>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별표 4]

공주시 본청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분	계	담당관					시민국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소계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인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계	사회복지	복지	민회	세계무	문화체육관광	문화재	토지	소계	안전관리	경제	건설	산업	도시	허가	교통	환경	청소	수도	소계	공공개발사업과	5도2촌과				
<b>총계</b>	<b>534</b>	<b>80</b>	<b>20</b>	<b>24</b>	<b>15</b>	<b>21</b>	<b>191</b>	<b>27</b>	<b>26</b>	<b>18</b>	<b>24</b>	<b>29</b>	<b>14</b>	<b>16</b>	<b>15</b>	<b>22</b>	<b>233</b>	<b>27</b>	<b>19</b>	<b>24</b>	<b>19</b>	<b>16</b>	<b>24</b>	<b>25</b>	<b>17</b>	<b>36</b>	<b>26</b>	<b>30</b>	<b>13</b>	<b>17</b>		
<b>경우적 계</b>	<b>1</b>	<b>1</b>	<b>1</b>																													
시장	1	1	1																													
<b>일반직 계</b>	<b>527</b>	<b>75</b>	<b>17</b>	<b>24</b>	<b>13</b>	<b>21</b>	<b>189</b>	<b>27</b>	<b>26</b>	<b>18</b>	<b>24</b>	<b>29</b>	<b>14</b>	<b>16</b>	<b>13</b>	<b>22</b>	<b>233</b>	<b>27</b>	<b>19</b>	<b>24</b>	<b>19</b>	<b>16</b>	<b>24</b>	<b>25</b>	<b>17</b>	<b>36</b>	<b>26</b>	<b>30</b>	<b>13</b>	<b>17</b>		
<b>4급 소계</b>	<b>4</b>	<b>1</b>	<b>1</b>	<b>1</b>			<b>1</b>	<b>1</b>									<b>1</b>	<b>1</b>									<b>1</b>	<b>1</b>				
지방서기관	1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1	1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3						1	1									1	1														
<b>5급 소계</b>	<b>26</b>	<b>4</b>	<b>1</b>	<b>1</b>	<b>1</b>	<b>1</b>	<b>9</b>	<b>1</b>	<b>1</b>	<b>1</b>	<b>1</b>	<b>1</b>	<b>1</b>	<b>1</b>	<b>1</b>	<b>11</b>	<b>1</b>	<b>1</b>	<b>2</b>	<b>1</b>	<b>1</b>	<b>1</b>	<b>1</b>	<b>1</b>	<b>1</b>	<b>1</b>	<b>1</b>	<b>2</b>	<b>1</b>	<b>1</b>		
지방행정사무관	7	3	1	1	1		3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2	1		
지방의무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1	1																							
지방행정·사서사무관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복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지방행정·환경사무관	2																2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1						4					1	1	1	1	6	1	1	1			1	1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지방행정·농업·수역사무관·농촌지도관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지방행정·농업·복지사무관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b>6급 소계</b>	<b>141</b>	<b>22</b>	<b>5</b>	<b>7</b>	<b>4</b>	<b>6</b>	<b>48</b>	<b>6</b>	<b>7</b>	<b>4</b>	<b>5</b>	<b>7</b>	<b>4</b>	<b>5</b>	<b>4</b>	<b>6</b>	<b>82</b>	<b>9</b>	<b>5</b>	<b>7</b>	<b>6</b>	<b>5</b>	<b>5</b>	<b>7</b>	<b>5</b>	<b>7</b>	<b>6</b>	<b>9</b>	<b>4</b>	<b>5</b>		
지방행정주사	51	16	4	6	4	2	19	1	1	3	4	1	3	4	1	1	12	3	3	1				3		1	1	4	1	3		
지방세무주사	2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3	2																							
지방농업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복지주사	3																3					3										
지방시설주사	12						3							1	2	9	1		2		2	2					2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진료주사																																
지방환경주사	2																2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5						5	1	4																							
지방행정·전산주사	2	1				1																						1		1		
지방행정·사서주사																																
지방행정·공업주사	5						1			1							4		1						2		1					
지방행정·농업주사	1																1	1														
지방행정·복지주사	3																3					3										
지방행정·보건주사	2	1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3	1						
지방행정·시설주사	24	2		1		1	6					1	1	2	2	13	3	1	4			3	1				1	3	3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구	분	계	입양관					시민국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소	시	기	인	외	소	사	북	민	회	세	문	관	문	토	소	안	경	건	산	도	허	교	항	행	수	소	공	5
			계	제	청	사	사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지방보건·간호주사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1	1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2						1				1				1									1							
지방행정·복지·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2														2	1							1								
지방행정·농업·축산주사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지방농업·복지·시설주사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1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지방안전주사	2	1	1												1																
지방위생주사																															
지방열관리운영주사																															
지방전기운영주사	1																														
지방기계운영주사																															
<b>7급 소계</b>	<b>174</b>	<b>33</b>	<b>9</b>	<b>10</b>	<b>6</b>	<b>8</b>	<b>61</b>	<b>9</b>	<b>7</b>	<b>5</b>	<b>10</b>	<b>9</b>	<b>4</b>	<b>4</b>	<b>3</b>	<b>10</b>	<b>71</b>	<b>9</b>	<b>5</b>	<b>10</b>	<b>6</b>	<b>5</b>	<b>10</b>	<b>8</b>	<b>5</b>	<b>5</b>	<b>8</b>	<b>9</b>	<b>4</b>	<b>5</b>	
지방행정주사보	53	22	8	7	6	1	13	1	1	3	2	1	2	1	1	1	15	4	3	1		1		3	1		2	3	2	1	
지방세무주사보	7						7					7																			
지방전산주사보	2						1				1																	1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7						7	4	3																						
지방사서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4						1				1						3		1								2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복지주사보	3																3					3									
지방수의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진료주사보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간호주사보																															
지방환경주사보	3																3							1		1	1				
지방시설주사보	27	1				1	9				1	1	1	1	5	16	2	1	4			3	5				1	1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1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6	2				2	2																								
지방행정·세무주사보	3	1		1		2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6	1				1	5	3	2																						
지방행정·사서주사보																															
지방행정·공업주사보	4						2			1						2									2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															1							1					1	1		
지방행정·복지주사보	4															4						3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5						5			1	1	1	2	2	9	1		3		1	2	1	1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1	2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지방농업·수의주사보	1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지방복지·시설주사보	1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구 분	계	담당관					시민국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소	시	기	인	정	소	사	복	민	회	세	문	관	문	도	소	안	경	건	산	도	허	교	한	청	수	소	공	5
		정	정	정	사	감	회	회	지	원	계	무	체	광	화	지	계	관	제	실	림	시	가	통	경	소	도	계	개	2
<b>9급 소개</b>	<b>66</b>	<b>4</b>	<b>2</b>	<b>2</b>		<b>21</b>	<b>4</b>	<b>3</b>	<b>5</b>	<b>3</b>	<b>2</b>	<b>1</b>	<b>1</b>		<b>2</b>	<b>37</b>	<b>3</b>	<b>1</b>	<b>2</b>	<b>3</b>	<b>1</b>	<b>2</b>	<b>2</b>	<b>2</b>	<b>17</b>	<b>4</b>	<b>4</b>	<b>2</b>	<b>2</b>	
지방행정서기보	8					5										2														
지방사회복지서기보	3					3	3																							
지방사서서기보																														
지방공업서기보	1															1														
지방농업서기보																														
지방복지서기보	1															1					1									
지방보건서기보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1					1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					1	1																							
지방행정·공업서기보	1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보	1	1		1																										
지방행정·복지서기보																														
지방행정·보건서기보																														
지방행정·환경서기보	2															2										1	1			
지방행정·시설서기보	4					1				1						1	1											2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지방행정·시설·복지서기보	1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지방속기서기보																														
지방우편서기보	19					1				1						18	1			1	1							15		
지방위생서기보																														
지방시설관리서기보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지방통신운영서기보	1	1			1																									
지방전기운영서기보																														
지방기계운영서기보	2															2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11	1		1		4				3		1				5		1	1		1					1	1	1	1	
<b>연구직 계</b>	<b>4</b>	<b>2</b>		<b>2</b>		<b>2</b>								<b>2</b>																
지방학예연구사	2					2								2																
지방기록연구사	2	2		2																										
<b>지도직 계</b>																														
<b>지도관 소개</b>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b>지도사 소개</b>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b>법정직 계</b>	<b>2</b>	<b>2</b>	<b>2</b>																											
<b>6급 상당 소개</b>	<b>1</b>	<b>1</b>	<b>1</b>																											
비서요원	1	1	1																											
<b>7급 상당 소개</b>	<b>1</b>	<b>1</b>	<b>1</b>																											
비서요원	1	1	1																											

[별표 6]

## 공주시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b>총계</b>	157	89	70	19	68	21	14	16	17
<b>정무직계</b>									
시장									
<b>일반직 계</b>	127	89	70	19	38	20	14		4
<b>4급 소계</b>	1	1	1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1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b>5급 소계</b>	5	3	1	2	2	1	1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서사무관									
지방행정·공업사무관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지방행정·녹지사무관									
지방행정·보건사무관									
지방행정·환경사무관									
지방행정·시설사무관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지방행정·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1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1		
<b>6급 소계</b>	39	29	24	5	10	5	5		
지방행정주사									
지방세주사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농업주사	2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1						
지방녹지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1	1	1						
지방보건진료주사	15	15	15						
지방환경주사									
지방행정·세무주사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전산주사									
지방행정·사서주사									
지방행정·공업주사									
지방행정·농업주사	4				4	2	2		
지방행정·녹지주사									
지방행정·보건주사	2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지방행정·시설주사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1	1		
지방보건·간호주사	3	3	2	1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지방행정·농업·축산주사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1					
지방농업·녹지·시설주사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2	2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지방운전주사									
지방위생주사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지방기계운영주사									
<b>7급 소계</b>	<b>28</b>	<b>15</b>	<b>9</b>	<b>6</b>	<b>13</b>	<b>6</b>	<b>5</b>		<b>2</b>
지방행정주사보	1	1	1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서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1				1				1
지방농업주사보	3				3	3			
지방복지주사보									
지방수의주사보	1				1		1		
지방보건주사보	2	2	2						
지방보건진료주사보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1					
지방환경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행정·전산주사보									
지방행정·세무주사보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지방행정·사서주사보									
지방행정·공업주사보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				2	2			
지방행정·복지주사보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지방행정·시설주사보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1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1	1		
지방농업·수의주사보	2				2		2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1		
지방복지·시설주사보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3	3	1	2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주사보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1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2						
지방안전주사보									
지방위생주사보									
지방시설관리주사보									
지방통신운영주사보									
지방전기운영주사보									
지방기계운영주사보	1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b>8급 소계</b>	<b>39</b>	<b>32</b>	<b>28</b>	<b>4</b>	<b>7</b>	<b>5</b>	<b>1</b>		<b>1</b>
지방행정서기									
지방전산서기									
지방세무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사서서기									
지방공업서기									
지방농업서기	4				4	3	1		
지방복지서기									
지방보건서기	4	4	4						
지방보건진료서기	3	3	3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7	1					
지방환경서기									
지방시설서기									
지방행정·전산서기									
지방행정·세무서기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지방행정·공업서기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1			
지방행정·복지서기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지방행정·보건서기									
지방행정·환경서기									
지방행정·시설서기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1						
지방공업·농업서기									
지방공업·환경서기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3	3	3						
지방보건·간호서기	7	7	5	2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2						
지방환경·시설서기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1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1						
지방운전서기									
지방위생서기	1	1	1						
지방전기운영서기									
지방기계운영서기	1				1				1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									
<b>9급 소계</b>	<b>15</b>	<b>9</b>	<b>7</b>	<b>2</b>	<b>6</b>	<b>3</b>	<b>2</b>		<b>1</b>
지방행정서기보	1				1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지방사서서기보									
지방공업서기보									
지방농업서기보	1				1		1		
지방복지서기보									
지방보건서기보	2	2	2						
지방환경서기보									
지방시설서기보									
지방행정·세무서기보									
지방행정·전산서기보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지방행정·공업서기보									
지방행정·농업서기보	1				1	1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지방행정·녹지서기보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지방행정·시설서기보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지방사서·공업서기보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2	1					
지방행정·시설·녹지서기보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지방속기서기보									
지방운전서기보	2	2	1	1					
지방위생서기보	1				1	1			
지방시설관리서기보									
지방건축운영서기보									
지방통신운영서기보									
지방전기운영서기보									
지방기계운영서기보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2	1	1		1	1			
<b>연구직 계</b>									
지방학예연구사									
지방기록연구사									
<b>지도직 계</b>	<b>30</b>				<b>30</b>	<b>1</b>		<b>16</b>	<b>13</b>
<b>지도관 소계</b>	<b>3</b>				<b>3</b>	<b>1</b>		<b>1</b>	<b>1</b>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1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1				1			1	
지방농촌지도관	1				1				1
<b>지도사 소계</b>	<b>27</b>				<b>27</b>			<b>15</b>	<b>12</b>
지방농촌지도사	23				23			13	10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1

##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2항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동	직무분야
<b>총 계</b>	<b>11</b>	<b>6</b>	<b>2</b>	<b>2</b>	<b>1</b>		
<b>일반직 소계</b>	<b>11</b>	<b>6</b>	<b>2</b>	<b>2</b>	<b>1</b>		
<b>5급 소계</b>	<b>2</b>	<b>1</b>		<b>1</b>			
지방행정사무관	1	1					기업유치1
지방의무사무관	1			1			의료분야 1
<b>6급 소계</b>	<b>1</b>	<b>1</b>					
지방행정주사	1	1					시정홍보 1
<b>7급 소계</b>	<b>5</b>	<b>3</b>		<b>1</b>	<b>1</b>		
지방행정주사보	4	2		1	1		시정홍보 1 축제 1 유통지원 1 공연기획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	1					공공디자인 1
<b>8급 소계</b>	<b>1</b>	<b>1</b>					
지방행정서기	1	1					외국어 통역 1
<b>9급 소계</b>	<b>2</b>		<b>2</b>				
지방속기서기보	2		2				속기사 2